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루터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종류)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(이하‘비정년교원’이라 한다)의 직급은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 다만, 대외적으로‘비 정년트랙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2012.7.19.개정)

제3조(소속) 비 정년교원은 본 대학교 소속으로, 본 대학교 이외의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, 다른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(2016.3.14.개정),(2018.8.24.개정)

제4조(임용계약) ① 비정년교원은 계약으로 임용하며 직명, 근무기간, 보수, 근무조건, 재계약조건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2016.3.14.개정)

② 비정년교원의 초임 연봉은 교직원 보수규정 <별표1>에 따른 1호봉에 준하는 연봉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산정한다. 단, 재계약시 예산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다. (2019.8.21.개정)

③ 비정년트랙 교원의 초임 급여 산정 시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. (2019.12.12.개정)

제5조(임용기간)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단, 계약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. (2012.12.3.개정),(2016.3.14.개정)

제6조(재임용) 비정년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기 초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. 임용 기간이 만료된 비정년교원에 대해서는 비정년 교원의 업적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. 다만, 학기 시작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.(2012. 2.16.개정),(2016.3.14.개정)

[제목개정 2016.2.29.]

제7조(임용자격) ① 비정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.

조교수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(2012.7.19.개정)

제8조(업적평가)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되 전담영역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정년트랙의 변경) ① 정년트랙 변경신청은 신규임용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 한하며, 신청횟수는 재직 중 2회로 재임용 절차 완료 후에 신청할 수 있다. 단, 정년트랙의 변경은 매년 대학의 교원 수급현황에 따라 교무위원회를 거쳐 실시 여부를 정한다. (2019.10.24.개정),(2024.02.29.개정)

② 트랙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본교의 신청 공고 절차에 따라 트랙변경 신청서, 트랙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<별지서식1>를 아래 소속 부서장 등의 동의를 얻어 교학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심사대상자 본인이 학과장일 경우 소속학과 교원 2/3이상 동의를 얻는다. (2013.12.23.개정),(2016.3.14.개정),(2018.2.19.개정),(2024.02.29.개정)

소속	신청서 제출시 동의 사항
학과	학과장, 소속학과 교원 2/3 이상 동의
교양대학	학장, 소속대학 교원 2/3 이상 동의

1. 학과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후,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(2016.3.14.),(2018.2.19.개정)

2. 계약사항을 충족하는 자 (2016.3.14.),(2018.2.19.개정)

3.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 (2016.3.14.),(2018.2.19.개정)

4.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3편 이상(최근 2년)

3-3-1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내규

③ 삭제 (2016.3.14.)

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변경된 교원은 정년트랙 조교수(II)로 임용된다. (2016.3.14.),(2018.2.19.개정)

제9조의2(정년트랙의 변경 심의 절차)

① 트랙변경 심의대상자에 대한 정량평가 심사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제시된 교육영역, 연구영역, 산학협력영역, 봉사영역의 실적에 대하여 최종 2년간의 취득점수를 반영하고, 정성평가 심사는 근무연한, 근무충실도, 학생지도, 교육방침 이행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을 <별지서식2>에 따라 평가한다. (2024.02.29.신설)

② 정량평가 심사결과 (50%반영)와 정성평가 심사결과(50%)를 합산하여 100점 환산기준 80점 이상인 자를 트랙변경 최종대상자로 선발하고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(2024.02.29.신설)

제10조(책임강의시간) 비정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원칙으로 하되, 전담영역에 따라 책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2012.12.3.개정)

제11조(당연면직) 비정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. (2016.3.14.개정)

1.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2. 사망한 때
3. 학기 시작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
4. 임기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

제12조(기타)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절 승진임용, 제3절 재임용, 제4절 정년보장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그 이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3.14.]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트랙변경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트랙변경 심사 실적 내역 및 계획서

신청자	소속		직급	
	성명		평가대상기간	
실적 내역				
1. 기독교이념, 디아코니아 정신 구현 노력(정량 성과, 정성 성과)				
2. 교육/연구/산학 기여도(교육방법, 교육내용 등 정량 성과, 정성 성과)				
3. 대학발전기여도(국책사업 수주, 학교 홍보, 장학금 유치, 발전기금 유치 등 대학의 위상과 명예 및 재정에 기여한 정량·정성적 성과)				
향후 계획				
1. 대학 발전 기여/소속 학과(대학)에 대한 기여도 부분				

위와 같이 트랙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소속 학과장(학장):	(서명 또는 인)

루터대학교 총장 귀하

<별지서식2> (2024.02.29.신설)

정년트랙 변경 심사표

신청자	소속		직급	
	성명		평가대상기간	

평가항목 (실적내역)		배점	평가점수	평가항목 (향후계획)		배점	평가점수
1. 교원으로서의 자세		10		1. 실행 계획에 대한 적합성		6	
2. 우리 대학에 대해 이해 및 적응		10		2.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적용가능성		7	
3. 직무에 대한 충실 및 적극성		10		3.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효과		7	
소계		30		소계		20	
합계							
특이사항	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사유 기재						

20 년 월 일

심 사 위 원

소 속 :

성 명 :

(인)